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23호 2015. 10. 19. (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94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04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07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3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25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6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7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7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7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가정지구 6블럭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주)시티글로벌 대표 김상욱, (주)시티씨앤씨 대표 조성호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6블럭
 - 나. 대지면적 : 83,777㎡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60,088.1885㎡(지하 2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 16개동(아파트 1,5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616,291,942천원
4. 사업기간 : 2015. 10. ~ 2018. 03.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394호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같은 법」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10.1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 2차)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90-6번지 및 207-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열람내용 :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비치)
5. 소유자 및 관계인, 수용재결 대상 : 별첨1,2[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참조
6. 열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
7.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5.10.15.~ 2015.10.29. (초일 미산입 14일간)
8. 기타 : 공고(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32-560-44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사업자 제시액	주소	성 명 (지분율)	주소	성명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서구 신현동	190-6	도로	도로	8	8	1,284,000	인천 서구 석남동 000-0(8/4)	안○만 (1/1)			
2	"	193	전	대지	549	549	328,576,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0-63, 006 호(장항동, 우인아크리움빌 II)	정○동 (1/1)			
3	"	206-1	답	농경지	1,487	1,487	886,995,500	인천 서구 영곡로 383번길 08(신현동)	박○원 (1/1)			
4	"	207-1	답	농경지	791	791	350,808,500	인천 부평구 청중로29번길 0(청천동)	김○자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3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중합비즈니스센터)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용천지점)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	
5	"	207-3	답	대지	665	665	323,190,000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000동 001호 (도림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윤○의 (1/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6	"	207-4	답	대지	297	297	146,421,000	인천 남동구 오봉로 33, 000동 001호 (도림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윤○의 (1/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7	"	231-2	전	대지	172	172	90,472,0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49번길 00-00(석남 동)	정○숙 (1/1)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평중앙지점)	
합 계		7필지				3,969	2,127,747,500		6명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지장물)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단가	금 액 (원)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제시액(원)	성 명		
							태평양감정	제일감정		(지분율)		
1	서구 신현동	206-1	박치원 (유실수, 울타리)	이전비보상		일괄	7,000,000	6,750,000		6,875,000	박○원	
	"	"	대추나무	9~10년생	106 주	} 식	6,600,000	6,350,000		6,475,000		
	"	"	매실나무	9~10년생	15 주							
	"	"	감나무	9~10년생	5 주							
	"	"	호두나무	9~10년생	1 주							
	"	"	울타리		38 M	식	400,000	400,000		400,000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영업이전비 등)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1차)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단가	금 액 (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제시액(원)		
							태평양감정	제일감정			
1	서구 신현동	207-3	아성자원	이전비보상		일괄	24,920,000	24,340,000	24,630,000	최○길	
	"	"	계근대	철재	28.52 m ²						사유지
	"	"	계근대	철재	17.01 m ²						"
	"	"	EGI담장		L=69 M						"
	"	"	기타자재		1 식						"
	"	"	리어커 4대, 핸드카 1대, 물랭이 1ton, 옷 1ton, 드럼통 20C41개, 나대11백 5톤 2대분, 에어컨5대, 정수기5대, 세탁기23대, 소주병7,500개, 병적재용 소주 액주 박스250개, 콤푸레시아2대, 절단기 푸레지마1대, 냉장고3대, 가스렌지5대, 산소통3대, LPG통5대, 쏘파1인용 5대, 침대1대, 노래방기2대, 컴퓨터2세트, 린나이 난로1대, 오디오2대, 식탁 1개, 옷장 1개, 케비넷 1개, 울동20C 7개, 책상 및 의자1대, 쌀통1대, 전기온돌5평, 선풍기3대, 전 기히터2대, 청소기2대, 자전거1대, 복사기1대, 팩스기1대, 용접기1대, 30톤 저울1대, 1톤저울2대, 공구 및 잡 500K 3톤, 철물 공구통1대 판넬 6m-18장, 108레베 헨스3m, 110장 클럽반도1.000개, 사다리1개, 이동식 화장실 2개, 기타고철등 1식, 기타잡자재 1식								
	"	"	창고	철재	18.00 m ²						"
	"	"	사무실	철재	18.00 m ²						"
	"	"	창고	철재	9.00 m ²						"
	"	"	간판	철재	1.00 식						"
	"	"	대문	철재	1.00 식						"
2	서구 신현동	232외	목포금속	이전비보상		일괄	94,220,000	92,330,000	93,275,000	전○용	
	"	232,230,231-2	창고	컨테이너	6.25 m ²						사유지
	"	"	창고	철재	15.96 m ²						"
	"	"	계근대	철재	32.64 m ²						"
	"	"	EGI담장		L= 29 M						"
	"	"	철재 담장		L= 75 M						"
	"	"	콘크리트포장		456 m ²						"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단가	금 액 (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제시액(원)		
							태평양감정	제일감정			
	"	"	이동식화장실		1.5 m ²						"
	"	"	기타자재		1 식						"
	"	"	간판5개, 큰 대문2개, 작업창고 2동, P선탈피기1대, 절단기1대, 콘프레사2대, 창고1동, 작은저울1대, CC카메라6대, 캠퍼시설, 이동식화장실1대, 개집2채, 지하수1대, 고압세척기1대, 사무실1동, 냉장고2대, 소파2개, 의자3개, 컴퓨터2대, 전기판넬10평, 에어컨1대, 커피자판기1대, 경수기1대, 화분20개, 책상2개, 싱크대1개, 오디오1대, 텔레비전1대, 그림액자20개, 운동기구3개, 서류함5대, 가구2개, 선풍기5대, 전기난로2대, 살림살이 일체(그릇등), 콘테이너2동, 간판1개, 대문1, 기타고철등 1식, 기타잡자재 1식								"
	"	250-10	사무실	컨테이너	21 m ²						국유지
	"	"	창고	컨테이너	4 m ²						"
	"	"	관정		1 개소						"
	"	"	철재담장		L= 66 M						"
	"	"	콘크리트포장		507 m ²						"
	"	"	기타 고철류(잡자재 포함) 등		1 식						"
	"	207-1, 2230-4, 2231-5	창고	컨테이너	4 m ²						시유지
	"	"	EGI담장		L=32 M						"
	"	"	콘크리트포장		404 m ²						"
	"	"	기타 고철류(잡자재 포함) 등		1 식						"
3	서구 신현동	193	우리자원	이전비보상		일괄	28,400,000	27,830,000		28,115,000	박○배
	"	"	사무실	컨테이너	18 m ²						사유지
	"	"	창고	컨테이너	7.5 m ²						"
	"	"	계근대	철재	16.38 m ²						"
	"	"	이동식화장실		1 식						"
	"	"	EGI담장		L=77 M						"
	"	"	판넬담장		L=29 M						"
	"	"	콘크리트포장		687 m ²						"
	"	"	기타자재		1 식						"
	"	"	대문, 울타리, 6평콘테이너*2개, 3평콘테이너1개, 사각 방통(4평)1, 30톤ton, 저울계근대 1, Ton 저울1, 2평 개집1개, 1평 간이화장실1개 500kg정도 되는 피선 탈피 기계1개 울랭 크 큰거1대 영장선반2대 냉장고, 캐비닛4개, 책상, 테이블, 의자6개 경수기, TV디이2개, TV, 쇼파, 전기히터2개, 컴퓨터 셋트, 방범모니터, 전자레지, 전화기, 에어컨셋트, 액자 120cm*90cm1개, 액자60*90 1, 책상캐비닛1개, 리어카7대, 기타고철등 1식, 기타잡자재 1 식								"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단가	금 액 (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제시액(원)		
							태평양감정	제일감정			
	"	"	간판 2EA		1 식						"
	"	"	라이트		1 식						"
	"	"	간이수도		1 식						"
	"	"	가설지붕		1 식						"
4	서구 신현동	191-6	대불공예	이전비보상		일괄	16,920,000	16,650,000		16,785,000	박오우
	"	"	사무실	컨테이너	18 m ²						
	"	"	창고	목재	16.53 m ²						
	"	"	화장실	목재	6.5 m ²						
	"	"	창고	목재	22.23 m ²						
	"	"	창고	컨테이너	18 m ²						
	"	"	창고	목재	24.96 m ²						
	"	"	창고	목재	105.17 m ²						
	"	"	EGI담장		L=21 M						
	"	"	기타장비(자재)		1 식						
	"	"	정수기, 선풍기, 난로, 티비-2, 침대, 원탁, 소파, 책상-2, 의자-5, 책장, 장롱-2, 책꽂이, 불상(높이1M내외)-550기, 불사형틀(높이1M내외)-1기								
	"	"	간판 2EA		1 식						
	"	"	대문		1 식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2차)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사업시행자 제시액(원)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지분율)	주소	성명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서구 신현동	207-2	구거	나대지및 경작지	291	291	47,578,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33, 007동 001호(도림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윤○의 (1/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2	"	207-11	답	대지(고물상부지)	201	201	99,696,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로 33, 007동 001호(도림동, 주공그린빌아파트)	윤○의 (1/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3	"	207-12	답	대지(고물상부지)	595	595	309,102,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번 길 00 007동 0001호(호계동, 호 계1차현대홈타운)	박○서 (1/1)			
	계	3필지			1,087	1,087	456,377,000		2인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지장물)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2차)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수량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태평양감정	예일감정				
1	서구 신현동	249-19,250-10,207-2	주택	컨테이너, 판넬, 목재	117.51	㎡	21,151,800	19,976,700	20,564,250	빈○식	
	"	"	창고	판넬	2.86	㎡	171,600	185,900	178,750	"	
	"	"	수도		1	식	500,000	500,000	500,000	"	
	"	"	포도나무		21	주	700,000	737,000	718,500	"	
	"	"	오가피나무		32	주					
	"	"	복숭아나무		2	주					
	"	"	뽕나무		1	주					
	"	"	기타 수목 및 초화		1	식					
			국화꽃밭1, 국화3곳 허브꽃밭3, 딸기밭2곳, 맹문동2곳								
			기타잡자재		1	식	1,000,000	1,000,000	1,000,000	"	
			라면박스 40개정도 내용물 큰고무통10개 페인트 40L50통 마대포대40개 작은거4L 30통 황아리 간장 원장 이외10개높이1m짜리 황아리 감치 묻어 있는 것들 6개 큰거 역가스 황아리 큰거 15개 중간 13개 작은거 15개 스텐연탄 보일러 3구3단1대 기름보일러 스텐1대 기름통1개 광무레사1대 로프3조 페인트 종류 도배발판4개 핸드카대 호수2조 선반철재3단1개 (1m 600 높이 2m) 에어리스(도장기기) 울트라490 볼대4개 간2개 호수2조 도면그리는 책상1개 전선100g장도 자전거1대(밖에 있는 냉장고) 2개 그릇 고무통안에 포장필에 나무목재1톤 파티아시버2조 개집3채 고무통 큰거3개 밖에 싱크대1개 큰고무통안에 있는물건 그릇 냄브 흥 식당에서 사용하는 큰 국물냄비 접시들, 황아리 50개, 페인트통(40L) 50개, 포대 40개, 페인트통(4L) 30개								
			기타가재도구		1	식			감정평가제외	"	
			인방 장롱 1, 서랍장 5단 2개, 작은 서랍 4단 4개+1 더, 텔레비전 1개, 비디오 1개, 라디오 1개, 컴퓨터 1대, 복사기 1대(칼라), 건강 안마기, 찜기, 온열치료기, 기계 누워서 하는거 1대, 한빛나무베드 더불기 1대, 옥매트 더불 1대, 의류기 세람 1대, 의류기 안마기 2대, 책상 1개, 옷걸이대 1개, 시계 1개, 거울 큰 거 1개, 액자 5개, 서류서랍 4개, 도자기 1개, 까스난로 1대, 전기난로 3대, 선풍기 3대, 거실 장롱 4개분1개, 냉장고 사용 1개, 감치냉장고1개, 건냉장고2개, 밖에1개 의류기, 온열치료기 병원사용1개 소파1개, 탁자1자, 식탁대자1개 4인용식탁2개, 의자16개, 스텐책상서랍장2개, 황아리 역가스 담아놓은 황아리, 전기매트1개, 건너방 침대 알인용 3개, 책상5개, 책장3개, 옷걸이 2층 대1개, 바둑판1개, 서류서랍장1개, 어머니방 서랍장1개, 차단스장 서랍1개, 냉장고1개, 전기매트1개, 역가스 담 은병들 , 압력밥솥2개, 압력전기밥솥1개, 신발장1개, 마루장본말1개, 큰상 3개, 빨래걸이이동단1개, 세탁기드럼15kg1대 작은방 서랍 작은거1개 온갈1개 ,이불 여러채, 요 여러채								
계									22,961,500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영업이전)

사업명 :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2차)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금 액(원)			사업자 제시액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면적 수량	감정평가업자					
						태평양감정	예일감정				
1	서구 신현동	207-12	삼원자원	이전비보상			24,400,000	24,090,000		24,245,000	안○기
	"	"	사무실	컨테이너	18 m ²						
	"	"	주방	판넬	10.75 m ²						
	"	"	창고	판넬	5.70 m ²						
	"	"	창고	판넬	62.64 m ²						
	"	"	계근대		16.38 m ²						
	"	"	창고	판넬	20.91 m ²						
	"	"	EGI담장		L=109 M						
	"	"	간판		3.00 EA						
	"	"	기타 시설 및 장비								
	"	"	고철 10t, 동 2t, 전선 2t, 샷시 3톤, 알루미늄 2톤, 스텐 2공계열 4톤, 3공계열 3톤, 피자 5톤, 중철 2톤, 현 옷 1톤<변동할수 있음>, 냉장고 업소용 1대 일반 1개, TV 1대, 김치냉장고 3개, 책상 1개, CCTV 1개, 컴퓨터 1대, 금고 1개, 에어컨 1대, 전기 판 널 3평, 세탁기 2개, 선풍기 3개, 문닫 1개, 장롱 1개, 가스렌지 1개 집기류 다노, 돈신 분쇄기 1대, 전기난로 2개								
2	서구 신현동	207-12	경인자원	이전비보상			11,700,000	11,450,000		11,575,000	김○옥
	"	"	사무실	컨테이너	13.00 m ²						
	"	"	창고	컨테이너	8.00 m ²						
	"	"	창고	차양시설 및 천막	41.00 m ²						
	"	"	기타 시설 및 장비								
	"	"	세탁기, 정수기, 냉장고, 장롱, 콤프레사, 금속 절단기, 냉동고, 고철 15t,								



의견서	
1. 제목	석남완충녹지(3단계) 조성사업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p> <p>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p>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04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개발제한구역인 공촌 취락지구 내 미 개설 도로인 소3-2호선을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자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번지 일원
4.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1-1번지
5. 물건소유자 : 정홍섭 외 8인(8인은 주소불명)
6. 열람기간 : 2015. 10. 15(목) ~ 2015. 10. 29(목)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2)
8. 본 공고에 대한 세부목록(재결신청서 및 사업자 제시액 조서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GB팀(☎032-560-4682)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10.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07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77호(2014.04.07.)로 결정 고시된 “경서2구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자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가. 구역명칭 : 경서2구역(변경없음)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변경없음)
- 다. 면 적 : 34,025㎡(변경 없음)
- 라.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8. 12. 08 ~ 2015. 12. 08
 - 변 경 : 2008. 12. 08 ~ 2019. 12. 08
- 마.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계	34,025	
주 거 용 지	20,063	
단 독 및 연 립 주 택	4,207	
공 동 주 택	15,856	
기 반 시 설 용 지	13,962	

- 바. 기타사항(변경없음)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변경 없음)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변경 없음)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4784)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12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개정 등 관련 조례 개정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금 이자율 인하로 자활 자립 지원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목적)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 명시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용어변경
- 안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부터 제13조(지급정지)까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 삭제
- 안 제14조(대상사업)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 확대
- 안 제20조(자활사업자금 운영) 대여자금 이자율 인하 (2% → 1%)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 7512 (2015. 4. 27)
-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 설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조 번호, 조 제목 : 붙여 씀
 - 20인 → 20명, 의한 → 따른,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각호의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93) 또는 Fax(560-273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개정 등 관련 조례 개정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금 이자율 인하로 자활자립 지원 도모

3.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 명시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용어변경
- 안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부터 제13조(지급정지)까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 삭제
- 안 제14조(대상사업)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 확대
- 안 제20조(자활사업자금 운영) 대여자금 이자율 인하 (2% → 1%)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 - 7512 (2015. 4. 27)
-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 설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 조 번호, 조 제목 : 붙여 씀
 - 20인 → 20명, 의한 → 따른,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 각호의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육성을 위하여”를 “육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제26조의4”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조의2의 규정”을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활사업

제6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하고,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을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선양사업 운영”을 “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운영지원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호의 “영 제26조의 4”를 “영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공동체”를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의 규정”을 “제1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퍼센트”를 “1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u>기초생활보장사업</u>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u>기금관리기본법</u>」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 -----<u>자활사업</u>----- -----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및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3 ----- -----<u>운영에</u>-----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생략)</p> <p>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u>과 육성을 위하여</u>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 -----<u>육성에</u>----- -----.</p>
<p>3. "<u>기초생활보장사업</u>"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u>제26조의4</u>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p>	<p>3. "<u>자활사업</u>" ----- ----- -----<u>제10조</u>----- -----.</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 2. (생략)

5.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6. -----제3조

-----.

7.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

---자활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재원) -----
-----.

1. ~ 7. (현행과 같음)

8. ----밖의-----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기초생활보장사업(자활근로사업)을 포함한다)

② (생략)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 노인복지사업기금,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 ③ (생략)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고,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3. 자활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자활기금-----

-----.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대상사업) -----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비용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 4. ~ 5. 생략
-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사업
-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제9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7조 제6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거주지 동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

-----.

- 1. 현행과 같음
- 2. <삭 제>
- 3. <삭 제>
- 4. ~ 5. (현행과 같음)
- 6. <삭 제>
- 7. <삭 제>

제8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 <삭 제>

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제10조 <삭 제>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

제11조 <삭 제>

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 3. 생략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

제12조 <삭 제>

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년 초 선발된 장학생은 제13

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3조(지급정지) ① 제11조에 따라

제13조 <삭 제>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

하지 않으며, 학년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14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 문화 선양사업 운영
2.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운영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 오락,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신 설>

<신 설>

제15조(지원대상)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6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 3. (생략)

제14조(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1. -----
-----선양사업
2.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 및 문화탐방 활동지원
3.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 참여 지원
4.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 운영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원대상)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장 자활사업

제16조(대상사업) 현행과 같음

1. -- 제10조-----

2. ~ 3.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대상) 제16조에 따라 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
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
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

제18조(지원신청) 제17조에 따른 개
인·기관·단체 등이 제16조의 규
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

제17조(지원대상) -----

1. -----
-----제3조-----

2. -----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제12조-----

4. -----제9조-----

5. 자활사업-----

제18조(지원신청) -----
-----제16조-----

여야 한다.

제1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자활사업자금 운영)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창업자는 전세점포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③ (생략)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

제1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

-----제18조-----

-----.

제20조(자활사업자금 운영) ① 제16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1퍼센트-----

-----.

⑤ -----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생략)

제21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

-----.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19조-----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제20조제4항-----

-----.

② 제1항-----

-----.

③ -----제1항 -----
-----자활기업이-----

-----.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
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시행
에 -----
-----.

관계 법령 발췌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삭제<2014. 12. 30.>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 [제3조로 이동 <2015. 4. 20.>]

제10조(자활사업)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예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
- ③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의 자금 대여 규모, 사용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보증 없이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⑤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 [전문개정 2011.9.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 8. 13.), 사회복지봉사과-14450(2015. 8.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범위에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미 수급자 자녀에게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지급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사업으로
폐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현 시행규칙 제1조에서 7조까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고, 제8조는 삭제된 조항이며, 제9조에서 제10조는 사회복지사업
분야기금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업분야 기금은 목표액 2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만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현재 유명무실한
조항임.

2. 주요 개정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93) 또는 Fax(560-273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

2. 폐지이유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 폐지이유

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 8. 13.), 사회복지봉사과-14450(2015. 8.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미 수급자 자녀에게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지급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사업으로 폐지하고자 함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③ 현 시행규칙 제1조에서 7조까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고, 제8조는 삭제된 조항이며, 제9조에서 제10조는 사회복지사업분야기금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업분야 기금은 목표액 2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만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 현재 유명무실한 조항임.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4. 참고사항

가. 폐 지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교육급여)

- ①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제6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장학상) 필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도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5항이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2014. 7.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반납 절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정절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부절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반납절차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
 -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면제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범위내)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홍보 지원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0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교통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 전화번호 : 032-560-4872 (FAX 560-2794)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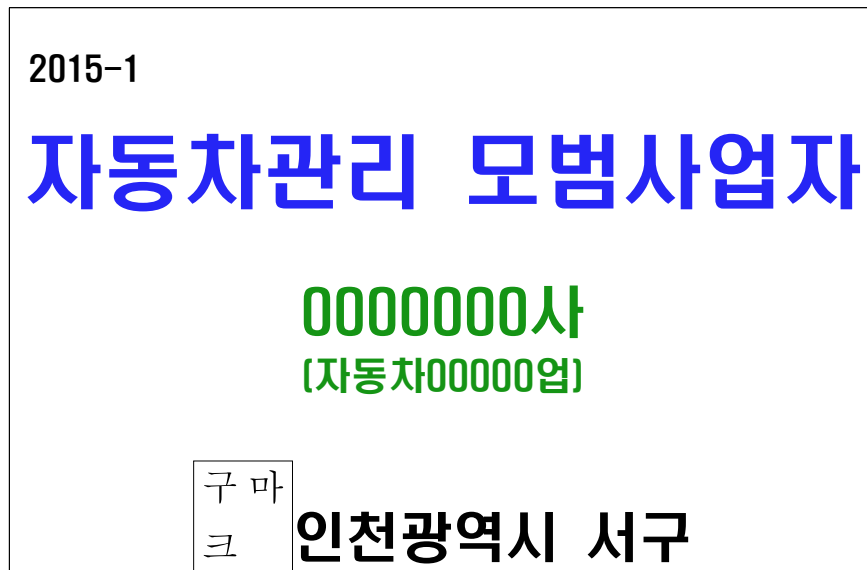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3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 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는 청색, 상호는 녹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업 종 :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 인

관계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8)에 따라 인천시 공통정비 대상인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및 위문품 지급」을 중단하고자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금) 지급에 대한 근거조항 삭제(안 제8조)
- 보훈단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삭제(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292, 팩스 032-560-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15.8)”에 따라 인천시 공통정비 대상인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및 위문품 지급」을 중단하고자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금) 지급에 대한 근거조항 삭제(안 제8조)
- 보훈단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 삭제(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에 관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2조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6호 중 “및 계기행사와 명절”을 “및 계기행사”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u>지원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지원에</u> ----- ----- -----.</p>
<p>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u>서구</u>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조(기본이념) ----- <u>서구(이하 "구"라 한다)</u>----- ----- ----- ----- ----- ----- -----.</p>
<p>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6. <u>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u>와 <u>명절</u>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7. (생략) 	<p>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 <u>및 계기행사</u> ----- 7. (현행과 같음)
<p>제10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p>	<p>제10조(보훈복지) -----</p>

<p>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예산 범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원</u></p> <p>3. (생략)</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현행과 같음)</p>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292, 팩스 032-560-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정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보훈청장”을 “인천보훈지청장”으로, “또는 관련단체”를 “또는 관련 단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참전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전화번호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 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대 리 수령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신 청 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p>※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p>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 인 사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 등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p>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u>구민의 안보의식</u>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인천광역시 서구민</u>----- ----- ----- -----.</p>
<p>제5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u>별지 제1호 서식</u>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지급신청) ----- ----- <u>별지 제1호서식</u>----- ----- -----.</p>
<p>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u>지방보훈청장</u>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u>또는 관련단체</u>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조(지급결정) ----- ----- ----- <u>인천보훈지청장</u>----- ----- ----- <u>또는 관련 단체</u>----- -----.</p>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425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5 년 10 월 19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168호(2014.11.10.)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7호(2015.01.12.)
4. 사업시행기간 : 2014. 11. 10. ~ 2015. 12. 31.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5. 10. 15. ~ 2015. 11. 02. (14일간)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서구 서곶로 307) ☎ 032-560-4485
8. 공고내용
 - 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	
1. 제목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p> <p>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 상 금 내 역(토지)

수용물건의 표시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성명	주민등록상주소	등기부상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소
		공부	실제								
인천시 서구 불로동	155-2	구		251 (6/15)	10,542,000	박**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번길 ***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번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폐지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로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이 존재하므로, 복지예산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292, 팩스 032-560-273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

2. 폐지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기준에 따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폐지 권고방침을 제시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 폐지
 - ▶ ‘15.4.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 ‘15.10.07 보건복지부 컨설팅 검토 시 폐지 합의

3. 주요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고로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이 존재하므로, 복지예산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폐지

4. 참고사항

가. 폐 지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 ① 국가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이나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수당 중단 권고방침을 제시하여 관련 조례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비사업) 통합운영으로 지역간(군·구) 형평성 유지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예산편성 시, 인건비 이외의 별도의 수당편성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 폐지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생활보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94) 또는 Fax(560-273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

2. 폐지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기준에 따라「인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수당 중단 권고방침을 제시하여 관련 조례 폐지
 - ▶ ‘15.4.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 ‘15.10.07 보건복지부 컨설팅 검토시 폐지 합의

3. 주요내용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비사업) 통합운영으로 지역간(군·구) 형평성 유지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예산편성 시, 인건비 이외의 별도의 수당편성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 폐지

4. 참고사항

- 가. 폐 지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제4항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4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수당 중단 권고방침을 제시하여 관련 조례 폐지

2. 주요 개정내용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비사업) 통합운영으로 지역간(군·구) 형평성 유지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예산편성 시, 인건비 이외의 별도의 수당편성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 폐지

3.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생활보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94) 또는 Fax(560-273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별지와 같이 폐지한다.

2. 폐지이유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제도의 통일성 및 지역간 형평성 기준에 따라「인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수당 중단 권고방침을 제시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 폐지
 - ▶ ‘15.4.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 ▶ ‘15.10.07 보건복지부 컨설팅 검토시 폐지 합의

3. 주요내용

-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비사업) 통합운영으로 지역간(군·구) 형평성 유지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 2016년부터 예산편성 시, 인건비 이외의 별도의 수당편성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 폐지

4. 참고사항

- 가. 폐 지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 제7호 및 제9호, 제4항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